



의료기관 인증 필수교육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과정소개

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, 아동학대의 유형과 의심징후를 파악하며, 신고의 무자로서의 신고방법과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숙지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학습목표

1. 아동학대 관련 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.
2.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징후에 대해 알 수 있다.
3.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에 대해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.
4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.

I. 아동학대 관련 법령

● 주요 관련 법률

- 「아동복지법」: 아동학대의 정의, 금지행위, 신고의무,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규정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아동학대처벌법):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, 피해아동 보호 등을 규정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26조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●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

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(아동복지법 참조).

※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, 학대의 주체는 보호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인이 포함된다.

II.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징후

● 아동학대의 유형

유형	내용	예시
신체적	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허용하는 행위	때리기, 흔들기, 화상 입히기, 물에 빠뜨

학대		리기 등
정서적 학대	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	언어적 모욕, 위협, 감금, 격리, 무시 등
성적 학대	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·성폭력 등의 행위	성적 접촉, 성적 노출, 음란물 보여주기 등
방임	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·의료·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	적절한 음식·의복 미제공, 학교 미취학, 의료 방치 등

● 의료기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의심징후

- 설명되지 않거나 상충되는 외상(멍, 골절, 화상 등)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경우
- 손상의 형태가 일상적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(담뱃불 모양 화상, 집게 모양 멍 등)
- 보호자의 설명과 아동의 상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
- 아동이 보호자에 대해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경우
- 위축되거나 또래 관계를 극도로 회피하는 행동
-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한 흔적(오래된 골절, 방치된 상처 등)
- 아동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거나, 적절한 위생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

III.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방법

● 신고의무자란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.

※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. 반면, 선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는다.

● 신고 방법

- 전화 신고: 112(경찰)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로 신고
- 온라인 신고: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
- 방문 신고: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

● 신고 시 전달할 내용

- 아동의 인적사항(이름, 나이, 성별, 주소 등) — 모르는 경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

- 학대 의심 내용(발견 경위, 아동의 상태, 의심되는 학대 유형 등)
-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(알 수 있는 경우)
- 신고자의 인적사항(비밀이 보장됨)

※ 신고자의 신원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보호되며,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밀이 보장된다. 아동학대가 '확인'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, '의심'되는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.

IV. 피해아동 보호절차

● 신고 접수 후 절차

- ① 신고 접수: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한다.
- ② 현장 조사: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)이 현장을 조사한다.
- ③ 응급보호: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각적인 분리·보호 조치를 취한다.
- ④ 사례 판단: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, 사례 유형을 분류한다.
- ⑤ 서비스 제공: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, 치료, 임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⑥ 사후 관리: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.

● 의료기관에서의 대응

-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, 의료기록에 관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.
- 아동의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사후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- 아동에 대한 추가 진단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.
- 학대 행위 의심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.

참고문헌 및 관련 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동법 시행령 (최신 개정본 참조)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(최신 개정본 참조)
- 보건복지부·아동권리보장원, 「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」
-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, 「아동학대 현황 보고서」 (최신본 참조)
- 아동학대 신고: 112 (경찰청)